

광주지방법원 2021. 5. 14 선고 2020가단1563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, C

피 고 D

변 론 종 결 2021. 4. 16.

판 결 선 고 2021. 5. 14.

주 문

1. 피고와 E 사이에 전남 고흥군 F 임야 9,079㎡에 관하여 2019. 12. 23. 체결된 증여계약을 11,347,62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11,347,6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E은 원고가 발급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2019. 11. 22. 이전부터 그 대금을 미납하였고, 원고는 2020. 9. 22. 기준 E에게 합계 11,347,629원(원금 9,646,498원, 수수료 및 연체료 등 1,701,131원)의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, E은 2019. 12. 23. 딸인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을 증여하고,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, 이후 피고는 2020. 6. 2.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20. 6. 19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, 한편 위 증여계약 체결 무렵 E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특별히 재산을 소유하지는 않았던 사실, E이 2021. 4. 14. 춘천지방법원 2021개회1481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현재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중인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.

2. 판단

가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E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결국 책임재산을 감소하게 하여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다를 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자인 E 및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.

나. 원고는,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2020. 6. 19.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구한다.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액은 2020. 9. 22. 기준 합계 11,347,629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변론종결일인 2021. 4. 16. 이를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며,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0. 6. 2.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액은 11,000,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, 변론종결일인 2021. 4. 16.에는 이를 초과하여 11,347,629원을 상회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다.

따라서, 가액배상으로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11,347,629원의 한도에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1,347,62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다. 한편, 피고는 E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을 개인회생 채권목록에 반영하였으므로, 사해행위취소 소송절차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이 사건

변론종결일 전까지 E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필요하다거나 이 사건 소송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강애란